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보고(일본 도쿄지사)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0.8월)

1. 2019년도 일본 수입식품 감시지도결과 통계 발표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9년판 수입식품(식기, 유아용 장난감 등 포함) 감시지도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9년 한해 동안 세계 각국가에서 일본으로 수입된 건수는 254만건, 수입중량은 3,327만톤에 달했으며, 신고된 물건중 217,216건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한 결과 763건이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폐기 처분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당함
- 각 국가에서 수입된 전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율은 8.54%였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위반율은 0.35%로 나타남
- 검역소가 매년 자체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검사의 경우 99,059건의 검사계획에 대해 99,636건(실시율 101%)을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 검사결과 위반건수는 144건으로 나타남

※ 자료원 :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s://www.mhlw.go.jp/content/000663993.pdf>

□ 시사점

- 한국산 수입건수는 127,188건으로 그중 6,235건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위반건수는 13건으로 나타남
- 한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율은 4.9%로 세계 전체 평균검사율인 8.54%에 비하면 낮은 검사율임. 또한, 검사결과 위반율은 0.21%로 나타나 세계 전체 평균치 보다 낮은 상태로 한국산 식품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일본 통관 간소화 선행샘플 검사 제도 소개

1) 선행샘플 검사제도 개요

- 본선 컨테이너 화물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전에 소량의 검사용 샘플을 수출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송부하여 검사하는 제도를 말함
- 선행샘플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검역소에 식품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식품 등으로 실시한 검사」라고 불리워지고 있음
- 선행샘플 검사시 제품은 해외 제조자 또는 수출업체로부터 등록검사기관에 직접 송부된 미개봉(세관등 행정기관 검사에 의한 개봉 제외)상태의 샘플이어야 함
- 선행샘플 검사비용은 일본 현지 수입업체가 검사기관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2) 선행샘플 검사 활용 수입신고

- 선행샘플을 활용한 검사성적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품목등록제도>를 위한 목적 이외는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2015년 4월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식품 등으로 실시한 검사결과 확인서」 사무규정에 의거 샘플 확인서와 시험성적서가 첨부될 경우 단발성 수입 신고의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대량의 컨테이너 수출전에 샘플검사를 통한 통관 원활화가 가능해짐
- 선행샘플 송부시에는 EMS, DHL, TNT 등의 국제택배업체를 사용하여 송부 가능하며, 택배전표도 검사기관에서 검역소에 제출 대상 서류중의 하나임으로 전표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명의 및 주소가 수출신고자와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함

3) 선행샘플 검사제도 장단점

- 컨테이너로 대량의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일본 식품위생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판단이 가능하며, 검사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화물이기 때문에 위반 사례로 판정되지 않음.

- ☞ 위반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신뢰도 관리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음
 - 실제 본선 컨테이너 수입신고시 작성해야 하는 모든 정보가 사전에 검사결과 통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여 수입이 안되는 사례 방지
 - 선행샘플 제도 이용이 불가한 품목으로는 일본 검역소가 지정한 검사 명령품목, 미생물관련항목(일반세균수, 대장균군, 아플라톡신 등), 매수입시 마다 검사하도록 지정된 항목(시안화합물, 유전자조작, 방사성물질 등)이 있을 경우 불가함
 - 수입제품의 성분 및 가공정도에 따라서는 별도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검역소에 검사필요 유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0. 8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45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한국산 식품의 위반사례는 삶은 봉장어에서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군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1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5건(11.1%), 냉동식품 등의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군 검출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21건(46.7), 첨가물 위반이 10건(22.2), 루마니아에서 수입된 신선버섯류에서 방사선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되는 위반을 포함한 기타 위반사례가 6건(13.3), 옥수수 등에서 아플라톡신 검출위반 3건(6.7) 등으로 나타남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8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7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각국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중 37.8%를 차지함. 잔류농약이 4건, 세균수 초과 등 위생위반 11건, 기타 치아민산 염산염의 성분규격 부적합 등 2건이 발생함

○ 인도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인도산은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검출 위반이 1건 발생하였으며, 과실조제품 및 고추조제품에서 지정외 첨가물인 TBHQ가 검출된 첨가물 위반이 3건 발생함

○ 태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닭고기가열처리 냉동제품에서 대장균균 양성 등 냉동식품 위생위반이 2건 발생하였으며, 정미에서 곰팡이 발생하는 위반 1건 등 계 3건의 위반이 발생함

○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냉동과실조제품, 코코넛음료, 인스턴트커피에서 대장균균 음성의 위반이 계3건 발생함

○ 한국산 수입식품 위반사례

- 한국산의 경우 냉동 삶은 붕장어에서 세균수 1.3×10^5 /g 검출로 기준치 초과 위반 및 대장균균 양성으로 위반 1건이 발생함

※ 무가열섭취 냉동식품의 세균수 기준치 : 100,000/g 이하

○ 기타국가 위반사례

- 말레이시아의 경우 과자류에서 지정외 첨가물인 TBHQ검출되는 위반이 2건 발생함
- 대만의 경우 조미료에서 지정외 첨가물인 TBHQ가 검출되는 위반이 1건 발생하였으며, 멜론시럽에서 첨가물인 아세살팜이 초과 검출되는 위반이 1건 발생하여 계2건의 위반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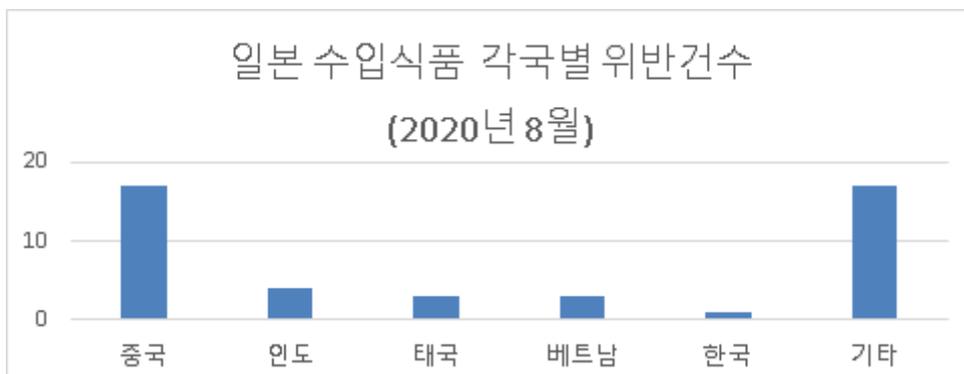
3. 한국산 들깨잎 잔류농약 검사기관 지정 발표

-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신선들깨잎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 위반으로 인한 명령검사를 7.31자로 발동한 바 있으나, 그동안 검사기관 지정이 안되어 검역소 분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해 왔으나, 등록 검사기관이 8.21일자로 지정되었음을 발표함
 - 지정검사기관명 : (일반재단법인)식품환경검사협회
- 향후 수입되는 한국산 신선들깨잎은 모두 동 검사기관을 이용하여 잔류농약 성분인 파클로브트라졸 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어야 통관이 가능함
 - 통상 검사에는 샘플채취부터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3일 정도 소요되며, 검사비용은 샘플채취 장소에 차이가 있으나 약25,000 수준임

□ 시사점

- 한국산 신선들깨잎은 현재 잔류농약 관련하여 안전한 제품의 공급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내 유통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 일본산으로 대체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 일본 수출용으로 재배관리된 안전성이 확립된 제품의 공급시스템 강화를 통해 일본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잔류농약 및 항균제 등	아플라 톡신	위생	첨가물	기타
중국	17	37.8	4	0	11		2
인도	4	8.9		1		3	
태국	3	6.7			3		
베트남	3	6.7			3		
한국	1	2.2			1		
기타	17	37.8	1	2	3	7	4
합 계	45	100.0	5	3	21	10	6
비율(%)			11.1	6.7	46.7	22.2	13.3

III

FTA 이행 이슈 관련

(해당 없음)